

산업안전 · 보건관리시책에 대한 제언

한국노총위원장 김 동 인



안전 · 보건관리의 중요성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모든 생산활동은 결국 그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선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해 주며,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새로운 기계시설의 도입과 아울러 유해한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재해와 직업병은 날로 늘어가고 나아가서는 공기와 수질(水質)마저 오염시킴으로써 예기치 않은 공해를 크게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학자간에는 경제성장실적에서 공해요소를 공제한 나머지로서 성장척도(成長尺度)를 측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순복지경제이론(純福祉經濟理論)」을 내세워 한때 경제학의 위기설(危機說)을 빚어내기 까지 했던 사실이 기억난다.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공해」라는 마이너스요인을 무시하고 경제의 양적인 수치만으로 성장률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거의 무의미한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직접당사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만의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귀중한 인적자원과 물질자원의 손실이 크다고 하겠으며 기업측면에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도외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작업환경이 쾌적하고 안전시설이 잘 갖추어졌느냐의 여부는 재해와 직업병의 발생빈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작업능률이나 생산성과도 밀접불가분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날에는 근로자의 능력위주로 적성검사에 의한 적성배치로서 근무부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 2차대전 이후 생산기계와 장치의 정밀화·자동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능력(知的能力)과 체력적능력에 비추어 무리없는 한도내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와 장치를 설계해나가는 현대적인 인간공학(人間工學)이 도입됨으로써 과거에는 사람을 기계시설에 맞추던 생산시스템에서 기계를 사람에게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하겠다.

제 2차대전후 세계적인 불황기에 U.S 스틸(Steel)의 개리(Gary)회장이 「안전제일주의」를 표방하여 주위의 조소(嘲笑)까지 받아 가면서 안전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크게 성공했다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한 일거리와 우리 산업사회에는 아직도 이 분야의 투자는 비생산적인 낭비이거나 한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업인이 허다한것 같다. 그 결과 급속도로 진전하는 기술혁신에 따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거대화화 첨단기술에 의한 대량생산체제하에서 고온·고속·고압·다습(多濕)·유해(有害)깨스분진·소음(騒音),불량광선,추락위험 등의 극한상태 속에 합리화 내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작업을 강행해 오고 있

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이와 같은 생산제일, 이윤우선의 낡은 노무관리방식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대형화가 높은 발생빈도를 방지하는 길은 기술혁신에 앞서 안전대책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은 제 2 차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기 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이 있었고, 1969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정」과 「근로보건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운영이 극히 미약하였다.

그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재해의 대형화와 높은 재해율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와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광산보안법상의 엄격한 안전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장성탄광의 갱내출수(坑内出水) 사고로 광원 10명이 매몰, 비참하게 순직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대검찰청 집계에 의하면 84년도의 산재사상자수만도 15만 7천 8백명이며 이중 사망자수는 1천 6백 67명에 달해 70년의 6백 39명보다 무려 25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83년중에도 15만 6천 9백 72명의 인명피해를 냈는데 이중 약 1%가 사망자이고 10%는 후유신체장애자(後遺身體障礙者)라고 하며 한편 경제적으로도 의료비와 보상금의 지급 등 직접손실이 1천 1백 76억원인바 여기에 하인릿치(Heinrich)의 주장대로 간접손실을 1:4의 비율로 추산한다면 약 4천 7백 4억원에

달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손실은 연간 5천 8백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유인(發生誘因)을 작업장의 불안전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행위로 대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로 건물과 부대시설, 안전장치, 안전표지, 기계·공구·보호구 등의 불비, 채광, 소음, 온·습도, 환기, 유해가스, 증기 분진 등과 기타 악천후(惡天候) 등으로 인한 외인적(外因的) 불안전상태를 말하며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치 않거나 안전수칙과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는 이 양자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복잡한 물리적·화학적 환경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만큼 이에 관한 생리적 허용기준을 적시에 정확히 측정하여 그때 마다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그것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와 아울러 과학적인 측정기구의 확보, 그리고 시설개선에 관한 기업주의 열의와 경제적 능력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있게 대처해 나가지 않고서는 제대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바 우리의 경우는 이점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인자(發生因子)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피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월 10만원내외의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어 그들은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영양섭취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더우기 주당 54시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로서는 과로(過勞)로 인한 사고율과 직업병의 이환률(罹患率)이 그만큼 높아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바람직한 대응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한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보다 차원 높은 시책방향을 이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것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는바 크다는 점은 위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다.

산업재해의 원인인 「작업환경의 불안전 상태」나 「종업원의 불안전행동」, 그 어느 것이나 그 배후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유인(誘因)이 개재해 있는 만큼 이들 유인을 미리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에 관한 몇가지 기본조건과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자한다.

① 무엇보다도 시설책임과 작업지휘권을 가진 경영수뇌부의 이해와 개선의지(改善意志)가 문제이다. 산업재해의 방지대책에는 많건 적건 경제적부담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때에 따라서는 「생산제일주의」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다. 여기에 경영수뇌부의 이해와 실천의지가 요청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②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이 문제이다. 재해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에는 우선 완벽한 관리기구를 확립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착실히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있는 관리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리요원을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는 재해예방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건물, 기계배치의 적정화, 생산공정의 개선 등 환경조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

으며

④ 관리요원등 감독자의 성의와 종업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인명피해뿐 아니라 시설과 원재료 그리고 제품의 손실과 보상부담에 이르기 까지 경영상의 물적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노사쌍방의 공통적인 손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영측이나 종업원이 다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 경영자는 안전시설은 물론 안전교육과 안전지도에 힘쓰는 한편 종업원도 안전수칙에 따라 올바른 작업행동을 취하는 성의와 태도를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⑤ 작업의 표준화와 바른 습관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작업진행과정에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동작과 일의 순서가 무질서하면 재해를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모든 작업공정을 표준화하여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일을 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은 재해방지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작업능률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⑥ 안전교육과 PR활동에 의한 안전지식과 안전작업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시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한 특별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에 취업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감독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수단으로서 ① 관리시스템의 적정화 ② 생산시설의 합리화 ③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교육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⑦ 생산업체나 감독관청의 전문요원과 과학적인 환경측정기구의 확보가 시급하다.

⑧ 우리의 경우 노동력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임금의 보장과 8시간노동제의 실시로 종업원의 영양공급과 과로를 막는 것도 재해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